

제15회 대한민국창업대상
시상 계획(안)

2018. 3

서울경제

I. 시상 개요

1. 명 칭 : 제15회 대한민국창업대상

2. 목 적

-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내 창업시장에서 새로운 모델 제시
- 기업인 활동의 정당한 평가를 도모하고, 사기를 고취하는 계기 마련
- 외식, 뷰티, 바이오, IT, 서비스, 문화, 금융, 제조, 스타트업 등 창업 전 분야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선 유능한 창업 경영인을 발굴
- 창업 문화 창달과 국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3. 주최 및 주관 : 서울경제신문 · 서울경제TV, 백상경제연구원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4. 시상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 14:00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2층)
- 참석 : 시상자, 수상자, 심사위원장, 수상업체 임직원 등

5. 문의 및 신청 접수처

- 대한민국창업대상 사무국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서울경제(NH농협생명빌딩 8층)
- TEL: 편집국 생활산업부 02)724-8636~7
마케팅국 기획부 02)724-8781
www.sedaily.com / e-mail: ykj@sedaily.com
- 문의 및 신청 : 서울경제 마케팅국 기획부 차장 윤경준

6. 시상 진행(안)

- ① VIP 환담 및 시상자, 수상자 입장
- ② 국민의례
- ③ 인사말씀 및 축사
- ④ 심사평
- ⑤ 시상
- ⑥ 기념촬영
- ⑦ 폐회

7. 시상 종류 및 내용

구분(상훈)		포상규모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2점 (단체/CEO)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5점
기관장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5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5점
	서울경제신문 사장상	5점

□ 해당 부문 및 내용(안)

※ 상기 시상 내용은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심사 및 평가 기준

1. 심사 기준

○ 창업경영인 및 회사 평가

-경영자 자질, 경영시스템, 경영전략 및 사업비전, 브랜드 경영성과, 가맹점 지원 등

2. 평가 기준

-공익활동, 사회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수상자격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힘들므로, 1차적인 평가기준을

‘경영성과’ 로 선정

-세부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

□ 심사 및 평가 기준

1. 세부 평가 항목

범주(배점)	평가항목(배점)	범주	평가항목(배점)
1. 경영자의 자질 및 리더십 (200)	(1)경영자의 자질 (100) (2)경영자의 경영철학 (100)	4. 브랜드 경영성과 (300)	(1)브랜드 경영체계 (100) (2)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100) (3)브랜드 시장지향성 (100)
2. 경영시스템 (500)	(1)경영조직 및 인사관리 (100) (2)연구개발 (100) (3)마케팅 (100) (4)정보화 (100) (5)물류시스템 (100)	5. 기업문화 (300)	(1)기업윤리 (100) (2)복지 시스템 (100) (3)종업원 만족도 (50) (4)노사간 커뮤니케이션 (50)
		6. 사회적 기여 (300)	(1)고용 기여도 (100) (2)창업 문화 진흥 기여 (100) (3)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100)
3. 경영전략 및 사업비전 (400)	(1)경영전략 (100) (2)상품 및 서비스 (100) (3)경영실적 (100) (4)사업전망 (100)	계/2000점	A,B,C,D,E,F 등 6단계로 평가

II. 응모 및 진행 일정

1. 응모 자격

- 창업경영인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영인
- 정부포상 결격대상이 아닌 자
-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수공기간 5년 이상 단체이며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그 외 표창은 2년 이상(단, 신생브랜드 부문은 2년 미만) 수공기간은 해당 브랜드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부터 응모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2. 응모 기한 : 2018년 3월26일(월)~4월27일(금)까지

3. 응모 방법

- 소정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접수 기한 내에 대한민국창업대상 담당자에게 접수(이메일접수)
 담당자: ykj@sedaily.com / 02-724-8781 (윤경준차장)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수량	서식	비고
1) 응모 신청서	1부	첨부1	
2) 공적조서	1부	첨부2	
3) 공적요약서	1부	첨부3	
4) 공적내용 증빙자료 (작성분량, 형식 자유, 내용은 평가항목 참고)	1부	-	해당업체에 한함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	결산월 기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7)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첨부4	
8) 추천서(양식, 형식 제한 없음)	1부		해당업체에 한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부	-	

※ 응모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양식은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4. 심사절차

- 심사위원(장) 선정 ⇨ 응모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실사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 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 확정

- 서류 심사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시상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평가모델에 의해 정보공개서와 공적요약서를 토대로 평가

- 발표 심사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응모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우수성 및 차별성 등을 평가

- 현장 실사 심사

정부포상 수상후보 기업에 대해 현지 방문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관계자 인터뷰

※ 현장 실사 시 심사위원은 3인1조(본지 기자 포함)로 구성함을 원칙

- 전체심사위원회 개최

전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표에 의한 평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포상대상자 확정

5. 진행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① 기본계획 확정	~3.12(월)	서울경제 대한민국창업대상 시행위원회
② 정부 협의	~3.21(수)	후원 기관
③ 신청 안내 사고 게재	3.26(월)	서울경제 지면
④ 응모신청 및 서류접수	3.26(월)~4.27(금)	서울경제 대한민국창업대상 시행위원회
⑤ 심사	5.10(목)	심사위원(심사인원 6명)
⑥ 정부 포상 심의	~6월8일(금)	정부 후원부처 및 기관
⑦ 시상식	6월19일(화)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2층)

※ 상기 일정은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의,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 정부포상에 대한 참고사항 >

1. 정부 포상의 기본방향

□ 재포상 금지기간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단체는 시상년도 제외
이후 동일공적분야에서 2년간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단, 주최·후원기관장상 가능)
- 장관표창 이하 정부포상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시상년도 제
외한 이후 2년간 다시 동일 훈격으로 받을 수 없음
(단, 훈격 격상은 가능)

※ 일반적 기준으로 본 포상은 최근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 정부포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정부의 공적심
사위원회 및 안전행정부에서 별도의 2차 심사절차를 통해 확정하여
포상의 신뢰도 향상함

2. 포상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단,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단,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수상거부시 향후 3년간 정부포상 추천 제한

-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고도 정부포상 수상거부시에는 향후 3년간 정부포상 추천을 제한